



2012 중견기업 세제정보

Tax System of Medium-Sized Industry 2012

Contents

I. 중견기업관련 조세제도 개요	1
1. 관련용어	1
2. 중견기업 정의와 범위	3
3. 중견기업 우대 세제 현황	5
II. 연구 및 인력개발	8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8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10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11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6
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7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8
7.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19
III. 투자촉진	22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22
2.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23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4
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25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7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

- 7.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29
- 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30

IV. 지역 간의 균형발전 33

-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33
- 2. 법인 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특례 34
-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36
- 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37
- 5.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38

V. 상속세 및 증여세 40

- 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0
- 2.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1
- 3. 상속 및 증여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42
- 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일감몰아주기)증여세 과세 43

VI. 기업구조조정 46

-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46
- 2. 기업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47

VII. 기타 50

- 1. 중복지원배제 50
- 2.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53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배제	54
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5. 접대비 손금불산입	56
6.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57
7.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58

* 이 보고서는 조사기획팀 박양균 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내용 관련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75-2991, Fax) 02-3275-2989, E-mail) ykpark@komia.or.kr

발행인 | 윤봉수 편집인 | 전현철 제작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 . 중견기업관련 조세제도 개요

I - 1. 관련용어

I - 2. 중견기업 정의와 범위

I - 3. 중견기업 우대 세제 현황

I. 중견기업관련 조세제도 개요

1. 관련용어

1) 익금

- 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
 -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손금

-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
 -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세법상 수익)에서 총손금(세법상 비용)을 공제한 금액

$$\text{소득금액} = \text{총익금} - \text{총손금}$$

4) 결손금

- 총손금이 총익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초과하는 금액
 - 이월결손금: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는 다르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써 아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5) 소득공제

-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의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6) 세액감면

-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7) 세액공제

-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일정금액(특정 지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8) 비과세

- 특정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9) 법인세 계산방식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

세액계산순서		
소득금액 계산단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상 소득
	- 이 월 결 손 금	→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공제순서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 율	→ 10%(과세표준 2억 원 이하), 22%(2억 원 초과)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법인세법이 정한 의무 위반 시 제재목적으로 부과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준비금 등 미사용 시 이자상당가산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차 감 납 부 세 액		

2. 중견기업 정의와 범위

1) 중견기업의 정의

- 중견기업이란 쉽게 정의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
 - 다만 금융업과 보험업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2)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업종 규모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한 다음년도부터 3년이 지난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을 초과한 기업

<표 1> 중견기업의 범위

기 준	해당업종	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	제조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 초과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 초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모든 업종	2012.1.1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1.1부터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1.1부터
3년 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2012.1.1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모든 업종	해당즉시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모든 업종	2011.1.1부터

*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등을 합산했을 때, 위의 업종별 혹은 중소기업 상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중견기업 우대 세제 현황

1) 최저한세 우대(조특법 제132조)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연차에 따라 1~3년차는 8%, 4~5년차는 9% 적용
- * 6년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0~14%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132조)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중견 1~3년차: 15% → 4~5년차: 10%
- * 6년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6%한도
- ** 위 세액공제율 적용은 총액발생기준(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액) 계산시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우대

(1) 가업승계 상속세 우대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 10년 이상 계속 경영 고용평균 1.2배 유지

- 10년 이상 사업자 가업상속: 100억 원 또는 상속재산 70%
단, 피상속인 15년 이상 150억 원 한도, 피상속인 30년 이상 300억 원 한도

(2) 가업승계 증여세 우대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30억 원 한도) 증여
- 주식 등의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부과
- 증여 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등: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 원까지 납세자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Ⅱ. 연구 및 인력개발

- Ⅱ-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Ⅱ-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Ⅱ-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Ⅱ-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Ⅱ- 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Ⅱ-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Ⅱ- 7.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II. 연구 및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1) 개요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매 출액의 3% 한도로 손금산입

2) 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3) 적용대상 비용

<표 2>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의 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 한함)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 마. 기술지도비 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아.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비

* 적용제외 비용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4) 손금산입

- 과세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의 3%

5) 익금산입방법

-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6개월간 균등 분할 익금산입
- 위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익금환입
 - 미사용분은 익금환입 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6) 신고절차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제출(매년 과세표준 신고 시)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 제출(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7) 일몰시한

- 2013년 12월 31일

8)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1) 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적용 대상 비용

<표 3>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비용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인건비, 견본품·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대학 또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 한함)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 마. 기술지도비 바.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비 아.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 -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 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비

3) 공제비율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공제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 간 연평균 발생액)의 40%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의 (3~15)%
 - * 중견기업 1~3년차: 15% → 4~5년차: 10% → 6년차 이상: 6% 한도 적용
 - ** 6년차 이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6%한도)

$$\text{계산식: } RD\text{지출액} \times 3\% + \frac{RD\text{지출액}}{\text{해당과세연도수입금액}} \times 0.5$$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허용

5) 신청절차

- 세액공제신청서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1) 개요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2) 적용범위

- 신성장동력분야 (아래 표 참조)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건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표 4> 신성장동력분야 대상기술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LED (별광 다이오드) 응용	에코LED	고효율 RGB LED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대용량 LED 양산장비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초고속 웨이퍼 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LED 스마트모듈	건설용 LED조명 모듈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LED 감성웰빙 조명	백색 LED 웰빙 조명기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고효율 충전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린카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밀도향상 기술
		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로봇 응용	청정생산용첨단제조 로봇시스템	차세대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차세대 태 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지속가능사회안전 로봇시스템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기술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협치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라이프케어로봇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에듀테인먼트로봇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바이오 제약 의료 기기	바이오헬스케어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첨단의료기기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신소재 나노 융합	초경량마그네슘소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기능성 나노필름	전도성 나노필름	나노코팅기술, 고분자 위상차 필름 제조기술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블락) 수지 제조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실리콘 및 CIS계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염료감응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개발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청정석탄에너지	석탄가스화기 및 가스 합성기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폐기물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 가스화 기술	
	풍력에너지	동력전달장치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변환장치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지열에너지	천부지열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심부지열	지열발전기술	
콘텐츠- SW	임베디드 시스템 SW	임베디드 SW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시스템 SW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지능형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 SW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다국어 언어처리 SW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입체영상 홀로그래피	3D 입체영상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4D 입체영상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홀로그래피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기술	
	탄소 저감 에너지	탄소포집 저장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연소후 CO2 포집 기술
석탄화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연소전 CO2 포집기술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CO2 저장플랜트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 기술	
고부가 식품 산업	친환경안심식품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비기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기능성 식품	기술융합기반 기능성식품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고도 물처리 산업	상수관리 최적화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IT융합	지능형그린자동차	주행상황인지	주행상황인지 센서,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제제어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상기술
	디지털 선박/조선	스마트자동차	시스템 기술, 차량외부통신 기반 중·형 방향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디지털 조선시스템	선박 생산 및 생산 후 관리 기술
	지능형 그린건설	디지털 선박시스템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지능형 그린 건축 /구조물 관리기술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지식기반생산시스템	지식진화형 u-팩토리 기술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공동핵심 부품	지능형 센서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 원천기술분야

-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표 5> 신성장동력분야 대상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금속	스마트 금속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친환경 공정	유기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에너지 금속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미국석유협회강 및 내마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산기반	임계성능 생산기반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그린에너지 생산기반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차세대 조명용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섬유	건강복지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녹색환경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생각하는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온실가스	대체원유 청정연료시스템	오일셀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청정합성연료 가스액화 정제 공정시스템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부존유망지역 정밀 탄성파 탐사기술
전력	지능형 전력계통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구분	분야	대상기술
	지능형 배전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기술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신형원전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가압경수형 원전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청정기반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그린프린팅 제품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를 이용한 규소철 및 선철 제조기술개발
화학공정	녹색 화학공정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인간친화성 소재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RFID-USN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지능형 공급망 관리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기술
화학물의약품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우주	인공위성	위성본체 부품품 개발기술, 위성탑재체 부품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품품 개발기술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용 소재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차세대 신공정 핵심장비 개발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신공정 핵심소재 개발	LED 백라이트 유닛기술, 무인돔 투명 전도성 산화물 소재 기술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조선	고부가가치 선박	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3) 공제비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20%
-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 경리해야 함

4) 일몰시한

- 2012년 12월 31일

5) 신청절차

- 세액공제신청서와 신성장동력 및 원기술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 개요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고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불산입 가능

2) 적용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3) 적용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른 출연금

4) 익금산입방법

- 연구개발비 지출: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 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

- 연구개발 자산(이외의 자산) 취득: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5) 특이사항

- 구분기장: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해야 함

6) 일몰시한

- 2012년 12월 31일

7) 신청절차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 명세서 제출

8)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 개요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

2) 적용대상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 시설: 공구/사무통신기기, 시계/시험계측기기, 광학기기/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적용자산 (무형자산 및 건축물 제외)
- 직업훈련용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 특허/실용신안/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4) 공제비율

-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
*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가능

5)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허용
- 중복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배제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 당해 자산 처분·임대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6)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까지

7)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8)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6.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 개요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첨단기술사업 또는 연구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적용대상 기업

-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과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 기업

3) 적용 범위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4) 감면비율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2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5) 특이사항

- 감면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
- 농어촌특별세 배제, 추계과세기 감면배제, 최저한세 적용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7)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7.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1) 개요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

2)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3) 적용범위물품

-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시약 및 견품
- 관세감면 고시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4) 감면비율

- 과세액의 80%

5) 신청절차

- 수입신고 수리전 (보통 수입신고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과 감면신청서를 통관세 관에 제출

6) 근거법률: 관세법 제90조

Ⅲ. 투자촉진

- Ⅲ-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Ⅲ-2.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 Ⅲ-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Ⅲ-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Ⅲ-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Ⅲ-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Ⅲ-7.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 Ⅲ-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Ⅲ. 투자촉진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1) 개요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 설비, 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중고품 및 리스 투자 제외)시 투자금액의 일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범위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 전략적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3) 공제세액

- 당해 시설 투자금액의 3%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표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1) 개요**

-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 투자 제외)시 당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범위

-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 광산보안시설
-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 축산물 또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

-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

3) 공제세액

-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 투자 제외)시 당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범위

- 에너지절약형 시설
-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허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3) 공제세액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 일몰기간

- 2013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4.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1) 개요

- 환경보전시설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 투자 제외)시 당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범위

- 환경보전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자원 재활용시설
-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등
- 청정생산시설

3) 공제세액

-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 일몰기간

- 2013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3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 투자 제외)시 당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범위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3) 공제세액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액의 7%

4)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5) 일몰기간

- 2013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4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개요

-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 위한 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투자 등 제외)한 금액의 일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대상

-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 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 적용대상투자

- 다음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투자(중고품 투자 및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투자 등 제외)

4) 공제세액

- 기초공제 투자금액의 3%(수도권 내) 혹은 4%(수도권 밖)
- 추가공제액은 해당 투자금액의 2% 상당 금액

5) 세액공제한도

-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
- 청년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1인당 2,000만원

6)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거쳐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 신청

7) 일몰기간

- 2014년 12월 31일

8)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9)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7.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1) 개요**

- 종업원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시설 취득 금액 일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대상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3) 적용대상투자

-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4) 공제세액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취득금액의 7%

5) 특이사항

- 5년 간 이월공제 가능

6)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

7)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8)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2) 적용대상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또는 외국자회사(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

3) 적용대상투자

-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 투자
- 광업권 또는 조광권 취득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4) 공제세액

- 해외자원개발 투자 혹은 출자금액의 3%

5) 일몰기간

- 2013년 12월 31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

IV. 지역 간의 균형발전

IV-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IV-2. 법인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IV-3.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IV-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IV-5.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IV. 지역 간의 균형발전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 대도시내 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2) 적용대상

-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대도시의 범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3) 적용요건

-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함
 - 지방으로 공장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 개시

4) 과세특례

- 대도시 내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 가능
-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간 균분한 금액을 익금산입

5) 과세이연금액

$$\text{과세이연금액} = \left[\begin{array}{ccc} \text{공장양도} & \text{공장장부} & \text{이월} \\ \text{가액} & \text{가액} & \text{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frac{\text{(공장이전비용 + 이전공장건물부속토지 및 기계장치의 취득·개체 등에 소요된 금액)}}{\text{공장의 양도가액}}$$

6) 과세특례 배제

-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7) 일몰기간

- 2014년 12월 31일

8) 신청절차

- 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계획서 혹은 이전완료신고서 제출

9)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2. 법인 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1) 개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적용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3) 적용요건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대지

혹은 건물 양도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

4) 과세특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 가능.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분한 금액을 익금산입

5) 과세이연금액

$\text{과세 이연금액} = \left[\begin{array}{ccc} \text{본사} & - & \text{본사} \\ \text{양도가액} & & \text{장부가액} \end{array} - \begin{array}{c} \text{이월} \\ \text{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지역소재 법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 취득액 +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 본사의 이전비용) <hr/> 본사의 양도가액
---	--

6) 과세특례 배제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처분 대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일몰기간

- 2014년 12월 31일

8) 신청절차

-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 제출

9)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1) 개요

-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 공장 또는 본사를 소유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

2) 적용대상

- 지방이전 법인(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3) 적용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함

(4) 감면내용

- 아래 박스 안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 감면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광역시, 구미시, 김해시, 마

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전액

- 그 다음 3년(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 공장 이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 본사 이전: (과세표준 - 부동산양도차익)×이전비율

* 이전비율: 다음 중 작은 비율을 선택해 산출

① $\frac{\text{이전 본사근무인원이 이진후 근로 발생 급여총액}}{\text{법인전체근무인원 급여총액}} \times 100$, ② $\frac{\text{이전본사근무인원}}{\text{법인전체근무인원}} \times 100$

- 공장과 본사 함께 이전: 위 2개 합산한 소득(단,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한도)

(5)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 개요

- 농공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3) 공제세액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 간 50% 세액감면

(4)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

(5)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5.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

(1) 개요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 외 소득 중 일부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2) 적용대상

- 농업회사법인

(3) 감면내용

- 다음 농업 외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4) 일몰기간

- 2012년 12월 31일

(5)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V. 상속세 및 증여세

V-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V-2.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V-3. 상속 및 증여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V-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V. 상속세 및 증여세

1. 기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30억 원 한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기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2) 적용대상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3) 적용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자가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
-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증자가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을 것
-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 공제비율 및 한도

- 주식 등의 증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 부과
- 증여 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등: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 원까지 납세자 선택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 증여 후 개시된 상속: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5) 증여세 부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으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수증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2.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증견기업(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감면

2) 적용대상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증견기업(10년 이상 계속 경영)

3) 공제요건

- 가업상속 재산 범위: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 사후관리: 상속 후 10년 간 고용평균 1.2배 유지

4) 공제비율 및 한도

-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10년 이상 사업자 가업상속: 100억 원 또는 상속재산의 70%
단, 피상속인 15년 이상 150억 원 한도, 피상속인 30년 이상 300억 원 한도
 - 2억 원(단,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 상당 금액)

5) 상속세 부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부과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시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단 물납하여 지분 감소한 경우 제외, 이때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함)
 - 상속 후 10년 간 고용평균 120%에 미달한 경우

6) 신청절차

-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 제출

7) 근거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3. 상속 및 증여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1) 개요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과세

2) 대상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국채· 공채 등

3) 할증 과세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그 지분율에 따라 할증과세
 - 50% 초과: 30% 할증과세
 - 50% 이하: 20% 할증과세

4) 근거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 개요**

-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 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2) 대상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으로 수혜법인의 지분 3%(제3의 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포함) 이상 대주주

3) 적용요건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기준으로 특수관계(지배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고 지배) 법인과 거래비율이 30% 초과할 것

4)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영업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아래식과 같이 계산

세후영업이익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3%)

5) 특이사항

- 이중과세 조정: 주식 양도시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과세 제외
- 증여의제시기: 매 사업연도 말

6) 근거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VI. 기업구조조정

VI-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VI-2. 기업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VI. 기업구조조정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개요

-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

2) 적용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 기업

3) 적용요건

- 사업 양수도방법: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새로 설립된 법인 자본금 요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4) 적용제외

-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5) 신청절차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 기업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또는 익금불산입

2) 적용요건

-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3) 과세특례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
-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4) 적용제외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자산 양도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단,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지 아니함)

5) 신청절차

-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

6)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VII. 기타

VII-1. 중복지원 배제

VII-2.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VII-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배제

VII-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VII-5. 접대비 손금불산입

VII-6.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VII-7.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VII. 기타

1. 중복지원 배제

1) 개요

- 동일 투자 대상에 2가지 이상 조세감면이 허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2) 주요내용

- 아래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 중복적용 배제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제11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제24조)
 - 안전설비 투자(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제25조의2)
 - 환경보전시설 투자(제25조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제25조의4)
 - 고용창출투자(제26조)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제94조)
-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① 세액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제12조의2)

- 법인전환(제32조제4항):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지방이전법인(제63조의2 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제64조)
- 농업회사법인(제68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제104조의24 제1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제121조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제121조의9 제2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제121조의17 제2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제121조의20 제2항)
- 금융중심지창업기업(제121조의21 제2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제121조의22 제2항)

② 세액공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제8조의3)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제11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제24조)
- 안전설비 투자(제25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제25조의2)

- 환경보전시설투자(제25조의3)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제25조의4)
- 고용창출투자(제26조)
-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제94조)
- 제3차 물류비용(제104조의14)
- 해외자원개발투자(제104조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설치운영(제104조의22)
- 부가가치세 영세율(제104조의25)
- 동일사업장·동일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제12조의2)
 - 법인전환(제32조제4항):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지방이전법인(제63조의2 제2항)
 - 농공단지 입주기업(제64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제85조의6 제1항·제2항)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제104조의24 제1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제121조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제121조의9 제2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제121조의17 제2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제121조의20 제2항)
- 금융중심지창업기업(제121조의21 제2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제121조의22 제2항)
- 외국인투자기업(제121조의2)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제121조의4)
- 동일사업장·동일과세연도의 지방세 감면 중복적용 배제
 - 외국인투자 취득세 및 재산세(제121조의2)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제121조의9 제3항)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제121조의17 제3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제121조의20 제3항)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제121조의21 제3항)

3)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2.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개요

-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각종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의 적용전 과세표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2) 적용대상

- 내국 법인

3) 적용방법

-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의 범위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면제, 감면 등의 각종 감면을 적용한 후의 법인세액
- 각종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의 적용전 과세표준의 범위
 -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각종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면제,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표준
- 법인세 최저한세액 계산시 적용비율(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년차에 따라 차등 적용)
 - 각종 손금산입, 감면 전 법인세 과세표준 × 8~14%
 - * 중견기업 1~3년차: 8%, 4~5년차: 9%, 6년차 이상: 10%(100억 이하) 11%(100억 초과~1,000억 이하) 14%(1,000억 초과)
 - ** ()은 과세표준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각종 감면 적용 배제 순서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세액공제금액 >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5)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배제

1) 개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행해지는 일정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배제

2) 적용대상

-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한 경우

3) 감면배제 대상

-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 안전설비 투자(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제외)

4)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 적용대상

-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

3) 적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것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4) 공제세액

- 초과금액의 3%(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5) 일몰기간

- 2012년 12월 13일

6)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7)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5. 접대비 손금불산입

1) 개요

-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의 경우 손금불산입

2) 적용대상

- 법인

3) 접대비한도

- 접대비한도액 = ① + ②
-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 ②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적용율
100억 원 이하	0.2%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원 초과금액의 0.1%
500억 원 초과	6천만원 + 500억 원 초과금액의 0.03%

4)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25조

6.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1) 개요

- 접대비로 지출한 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손금산입

2) 문화접대비

-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비디오물의 구입
-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간행물의 구입
-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3) 손금산입

-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에 상당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

4) 일몰기간

- 2014년 12월 31일

5)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7.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1) 개요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 적용대상

- 법인

3) 분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구분	납부세액	납부기간내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2천만 원 이하	법인세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천만 원 초과	법인세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4)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64조



사단
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

서울 마포구 도화2동 37번지 진도빌딩 11층
Tel: 02)3275-2985~8 Fax: 02)3275-2989
www.komia.or.kr